

---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축하 나눔의 자리

---

\*\*\*      순서      \*\*\*

@ 경과보고 -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 회장,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법제정의 의미와 주요골자-신혜수

@ 감사패 증정-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다과회-다 함께

일 시 : 1997. 11. 19(수). 2시

장 소 : 여성평화의집 강당

주 썸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법안의 주요골자

###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 1)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 행위임을 명시한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러한 인식전환은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또한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①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부터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응급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②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신고에 의한 것과 고소, 고발에 의한 두가지 경로로 이뤄지게 되어 즉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었다.

③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다 그러나 불처분의 결정등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④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 보호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토록 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⑤ 가정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통제를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은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가능토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찰의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 제5조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제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2) 수사 기간동안의 피해자 보호

#### 제8조 ( 응급조치의 청구 )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 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대리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 1항의 항고를 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등항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 보호처분의 내용

#### 제4:조 ( 보호처분의 결정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4) 피해자의 진술권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산불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제 57조, 61조)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1)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2)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도록 하고 있다.

3)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치료보호를 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토록하고 있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바람직한 조치이다.

## 家庭暴力犯罪의 處罰等에 관한特例法案

###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犯罪의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特례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行함으로써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고 건강한 家庭을 育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產上 被害를 수반하는 行爲를 말한다.
2. “家庭構成員”이라 함은 다음 각目的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가. 配偶者(事實上 婚姻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配偶者관계에 있었던 者
  - 나. 自己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관계(事實上의 養親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者
  - 다. 繼父母와 子의 관계 또는 嫢母와 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者

라. 同居하는 親族관계에 있는 者

3. “家庭暴力犯罪”라 함은 家庭暴力으로서 다음 각目的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가. 刑法 第2編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중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第260條(暴行, 尊屬暴行)第1項 · 第2項, 第261條(特殊暴行) 및 第264條(常習犯)의 罪

나. 刑法 第2編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중 第271條(遺棄, 尊屬遺棄)第1項 · 第2項, 第272條(嬰兒遺棄),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및 第274條(兒童酷使)의 罪

다. 刑法 第2編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중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第277條(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第278條(特殊逮捕, 特殊監禁), 第279條(常習犯)(第276條 내지 第277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0條(未遂犯)(第276條 내지 第279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라. 刑法 第2編 第30章 脅迫의 罪중 第283條(脅迫, 尊屬脅迫)第1項 · 第2項, 第284條(特殊脅迫), 第285條(常習犯)(第283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6條(未遂犯)의 罪

마. 刑法 第2編 第33章 名譽에 관한 罪중 第307條(名譽毀損), 第308條(死者의 名譽毀損), 第309條(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毀損) 및 第311條(侮辱)의 罪

바. 刑法 第2編 第36章 住居侵入의 罪중 第321條(住居 · 身體搜

## 索)의 罪

사. 刑法 第2編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중 第324條(強要)

및 第324條의5(未遂犯)(第324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아. 刑法 第2編 第39章 詐欺와 恐嚇의 罪중 第350條(恐嚇) 및 第

352條(未遂犯)(第350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자. 刑法 第2編 第42章 損壞의 罪중 第366條(財物損壞等)의 罪

차. 兒童福祉法 第18條第2號를 違反한 罪

카. 가목 내지 자목의 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

4.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 및 家庭構成員인 共犯 (이하 “行爲者”라 한다)을 말한다.

5.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6. “家庭保護事件”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대상이 되는 事件을 말한다.

7. “保護處分”이라 함은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審理를 거쳐 行爲者에게 과하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適用한다.

## 第2章 家庭保護事件

### 第1節 通 則

第4條(申告義務等) ① 누구든지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搜查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兒童의 教育과 保護를 담당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
2. 兒童, 60歲이상의 老人 기타 정상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 등을 담당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
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碍人福祉法에 따른 障碍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

③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에 따른 家庭暴力관련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相談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的 法定代理人 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申告한 者(이하 “申告者”라 한다)에 대하여 그 申告行爲를 이유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5條(家庭暴力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즉시 現場에 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暴力行爲의 제지 및 犯罪搜查
2. 被害者와 家庭暴力관련相談所 또는 保護施設 引渡(被害者の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被害者와 醫療機關 引渡
4. 暴力行爲의 재발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를 申請할 수 있음을 통보

第6條(告訴에 관한 特例) ①被害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를 告訴할 수 있다. 被害者와 法定代理人이 行爲者이거나 行爲者와 공동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때에는 被害者的 親族 또한 告訴할 수 있다.

②被害人는 刑事訴訟法 第224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行爲者가 自己 또는 配偶者の 直系尊屬인 경우에도 告訴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이 告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被害人에게 告訴할 法定代理人이나 親族이 없는 경우에 利害關係人の 신청이 있으면 檢事는 10日이내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第7條(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司法警察官은 家庭暴力犯罪를 신속히 搜查하여 事件을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

은 당해사건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8條(臨時措置의 請求) 檢事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家庭暴力犯罪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司法警察官의 신청에 의하여 第2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臨時措置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9條(家庭保護事件의 處理) 檢事는 家庭暴力犯罪로서 事件의 性質 · 動機 및 結果, 行爲者的 性行등을 고려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被害者的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0條(管轄) ①家庭保護事件의 管轄은 行爲者的 行爲地 · 居住地 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으로 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의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決定은 單獨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

第11條(檢事의 送致) ①檢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을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送致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家庭暴力犯罪와 그 외의 犯罪가 競合하는 때에는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事件만을 분리하여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第12條(法院의 送致) 法院은 行爲者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  
定으로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의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被害者の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3條(送致時의 身柄處理) ①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  
한 送致決定이 있는 경우 行爲者를 拘禁하고 있는 시설의 長은 檢  
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 法院  
이 있는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 · 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行爲者를 관할 法  
院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行爲者에 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刑事訴訟法 第92條, 第203條  
또는 第205條의 拘束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拘束令狀의 效力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여부를  
決定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第14條(送致書)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家庭保  
護事件으로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를 보내야 한다.

②第1項의 送致書에는 行爲者的 姓名 · 住所 · 生年月日 · 職業 ·  
被害人와의 관계 및 行爲의 개요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  
考資料를添附하여야 한다.

第15條(移送) ①家庭保護事件을 送致받은 法院은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適正한 調査 ·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事件을 즉시 다른 관할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第1項 規定에 의한 移送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添附하여 行爲者와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保護處分의 效力)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確定된 때에는 그 行爲者에 대하여 同一한 犯罪事實로 다시 公訴를 제기 할 수 없다.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送致된 때로부터 時效進行이 停止되고 그 事件에 대한 第37條第1項의 不處分의 決定(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確定된 때 또는 第27條第2項 · 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共犯의 1人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 대하여 效力を 미친다.

第18條(秘密嚴守등의 義務) ①家庭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家庭保護事件의 調査 · 審理 및 그 執行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 補助人 또는 相談所등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그 職에 있었던者를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②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行爲者, 被害者, 告訴人·告發人 또는 申告人の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 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할 수 없다.

## 第 2 節 調 査 · 審 理

第19條(調查·審理의 方向)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는 醫學·心理學·社會學·社會福祉學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行爲者·被害者 기타 家庭構成員의 性行·經歷·家庭狀況과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 등을 밝혀서 이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處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위하여法院에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調査官의 資格·任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21條(調査命令) 刑事는 調査官에게 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의 審問이나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 등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第22條(專門家の 意見照會) ①法院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

學者 · 社會福祉學者 기타 관련 專門家에게 行爲者 ·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精神 · 心理狀態에 대한 診斷所見 및 家庭暴力犯罪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照會할 수 있다.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查 · 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23條(陳述拒否權의 告知) 判事 또는 調查官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查할 때에 미리 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24條(召喚 및 同行令狀) ①判事는 調查 · 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行爲者 · 被害者 · 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判事는 行爲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5條(緊急同行令狀) 判事는 行爲者가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の 保護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6條(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行爲者の 姓名 · 生年月日 · 住居, 行爲의 概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執行에 착수하지 못하여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指示와 發付 年月日을 기재하고 判事が 署名 · 擻印하여야 한다.

第27條(同行令狀의 執行등) ①同行令狀은 調査官이나 法院의 法院書

記官 · 法院事務官 · 法院主事 · 法院主事補(이하 “法院公務員”이라 한다)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法院은 行爲者의 所在不明으로 인하여 1年이상 同行令狀을 執行하지 못한 경우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③法院은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行爲者的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8條(補助人) ①行爲者は 자신의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辯護士, 行爲者の 法定代理人 · 配偶者 · 直系親族 · 兄弟姊妹 와 戶主, 相談所등의 相談員과 그 長은 補助人이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者를 補助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辯護士가 아닌 補助人은 金品 · 饗應 기타 利益을 받거나 받을 것을 約束하거나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法院은 行爲者が 刑事訴訟法 第33條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辯護士를 行爲者の 補助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補助人에게 지급하는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費用法을 準用한다.

第29條(臨時措置)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의 원활한 調査·審理 또는  
被害者の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行爲  
者에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住居 또는 占有하는 房室로부터의  
退去 등 隔離

2. 被害者の 住居, 職場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接近禁止

3.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의 委託

4. 警察官署 留置場 또는 拘置所에의 留置

②同行令狀에 의하여 同行된 行爲者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行爲者에 대하여는 行爲者が 法院에 引致된 때로부터 24時  
間이내에 第1項의 措置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被害者  
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行爲者的 補助인이 있는 경우에는 補助人에게, 補助인이 없는 경우  
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行爲者が 지정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行爲者에게 律護士등 補助  
人을 選任할 수 있으며 第49條第1項의 抗告를 제기할 수 있을을  
告知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1號·第2號의 隔離 및 接近禁止期間은 2月, 同項第3號  
第4號의 委託 및 留置期間은 1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

의 보호를 위하여 그期間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각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第1項第3號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行爲  
者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民間이 운영하는 醴療機關등에 대하여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醴療機關등의 長에게 미  
리 告知하고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⑧判事는 第1項 各號에 규정된 臨時措置의 決定을 한 때에는 調查  
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또는 拘置所 소속 矯正職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行爲者, 그 法定代理人이나 補助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  
措置決定의 取消 또는 그 종류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⑩判事는 職權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臨時措置를 取消하거나 그  
종류를 變更할 수 있다.

⑪第1項第3號의 委託의 대상이 되는 醴療機關 및 療養所의 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0條(審理期日의 指定) ①判事는 審理期日을 指定하고 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家庭保護事件의 要旨 및 補助人  
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理期日은 補助人과 被害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1條(審理期日의 變更) 刑事는 職權 또는 行爲者나 補助人の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變更된 期日을 行爲者·被害人 및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2條(審理의 非公開) ① 刑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幸福와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證人으로 召喚된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은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幸福와 安定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刑事에 대하여 證人訊問의 非公開를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는 그 許可여부와 公開法庭외의 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訊問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

第33條(被害人의 陳述權等) ① 法院은 被害者の 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申請인이 이미 審理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申請인의 陳述로 인하여 審理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

해 家庭保護事件에 관한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法院은 審理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調査官에게 意見을 陳述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는 공정한 意見陳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行爲者的 退場을 命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被害者は 辯護士, 法定代理人 · 配偶者 · 直系親族 · 兄弟姊妹 · 戸主, 相談所 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意見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인이 召喚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第34條(證人訊問 · 鑑定 · 通譯 · 翻譯) ①法院은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을 命하며 通譯 또는 翻譯을 하게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中 法院의 證人訊問과 鑑定 · 通譯 및 翻譯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證人 · 鑑定人 · 通譯人 · 翻譯人에게 지급하는 費用 · 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中 費用에 관한 規定 및 刑事訴訟費用法을 準用한다.

第35條(檢證 · 押收 · 搜索) ①法院은 檢證 · 押收 및 搜索을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中 法院의 檢證 · 押收 및 搜索에 관한 규정은 家庭

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6條(協調 · 援助) ①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의 調査 · 審理에 필요한 경우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에 대하여 協調와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拒否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7條(不處分의 決定)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處分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1. 被害者の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거나 被害者の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家庭暴力犯罪만을 대상으로 하는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告訴가 取消되거나 被害者가 處罰을 회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意思表示를 한 때

2.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性質 · 動機 및 結果, 行爲者の 進行 · 痘癥 등에 비추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法院은 第1項第3號의 사유에 의한 不處分의 결정을 한 때에는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行爲者,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8條(處分의 期贊等)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處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處分의 決定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移送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移送받은 경우에는 移送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39條(委任規定) 家庭保護事件의 調査 · 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第3節 保 護 處 分

第40條(保護處分의 決定등) ①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이 適用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1. 行爲者가 被害者에게 接近하는 行爲의 제한
2. 親權者인 行爲者的 被害者에 대한 親權行使의 제한
3.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에 의한 社會奉仕 · 受講命令
4.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에 의한 保護觀察
5.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保護施設에의 監護委託
6. 醫療機關에의 治療委託
7. 相談所등에의 相談委託

②第1項 各號의 處分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第1項第2號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被害者를 다른 親權者나 親

族 또는 적당한 施設로 引渡할 수 있다.

④法院은 保護處分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檢事, 行爲者,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保護處分을 委託받아 행하는 保護施設, 醫療機關 또는 相談所등(이하 “受託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機關이 民間에 의하여 운영되는 機關인 경우에는 그 機關의 長으로부터 受託에 대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行爲者的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41條(保護處分의 期間) 第40條第1項第1號 · 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의 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으며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 · 受講命令은 1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第42條(沒收) 刑事는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 決定으로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件으로서 行爲者의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没收할 수 있다.

第43條(保護處分決定의 執行) ①法院은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保護處分의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保護處分의 執行에 있어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

訴訟法, 保護觀察等에 관한法律 및 精神保健法을 準用한다.

第44條(報告와 意見提出등) 法院은 第40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 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45條(保護處分의 變更) ①法院은 保護處分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請求에 따라 決定으로 1회에 한하여 保護處分의 種類와 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의 種類와 期間을 變更하는 경우 종전의 處分期間을 합산하여 第40條第1項第1號 · 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期間은 1年을,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期間은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處分變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行爲者, 法定代理人, 補助人,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受託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46條(保護處分의 取消) 法院은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が 第40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의 決定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職權, 被害者の 請求,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고 事件을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47條(保護處分의 終了) 法院은 行爲者의 性行이 纠正되어 정상적  
인 家庭生活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保護處分을 계  
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被害者の 請求, 保護觀察  
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護處分의 全  
部 또는 一部를 終了할 수 있다.

第48條(費用의 負擔) ①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決定  
또는 第40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는 委  
託 또는 保護處分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한다. 다만, 行爲者가 지급  
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가 이를 負擔할 수 있다.  
②判事는 行爲者에 대하여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豪納  
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爲者가 負擔할 費用의 計算, 請求 및  
支給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第4節 抗告와 再抗告

第49條(抗告) ①第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廷長 또  
는 變更의 決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第40條의 保護處分, 第45  
條의 保護處分의 變更 및 第46條의 保護處分의 取消에 있어서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行爲者,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은 家庭法院本院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處分의 決定을 한 경우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대에는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法院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抗告의 제기기간은 그 決定을 告知받은 날부터 7日로 한다.

第50條(抗告狀의 제출) ①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抗告狀을 제출받은 法院은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기록을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51條(抗告의 裁判)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에 違反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다른 관할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還送 또는 移送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破棄하고 스스로 상당한 臨時措置, 不處分 또는 保護處分의 決定을 할 수 있다.

第52條(再抗告) ①抗告의 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法律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第53條(執行의 不停止) 抗告와 再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호

력이 없다.

第54條(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이 終決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과 決定書를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55條(刑事訴訟法의 準用) 이 章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 3 章 民事處理에 관한特例

第56條(賠償申請) ①被害者は 家庭保護事件이 繫屬된 第1審 法院에 第57條의 賠償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不 하지 아니한다.

②訴訟促進등에 관한特例法 第26條第2項 내지 第8項은 第1項의 경 우 이를 準用한다.

第57條(賠償命令) ①法院은 第1審의 家庭保護事件 審理節次에서 保護處分을宣告할 경우 職權 또는 被害者の 申請에 의하여 다음各號의 金錢支給이나 賠償(이하 “賠償”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扶養에 필요한 金錢의 支給
2. 家庭保護事件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  
損害의 賠償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에 있어서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합의된 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명할 수 있다.

③訴訟促進등에 관한特例法 第25條第3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第58條(賠償命令의宣告) ①賠償命令은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賠償命令은 일정액의 金錢支給을 명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대상과 金額을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宣告할 수 있다.

④民事訴訟法 第199條第3項 · 第201條 · 第473條 및 第474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을 行爲者 및 被害者에게 지체없이 送達하여야 한다.

第59條(申請의 却下) ①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그 申請이 이유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할 수 있다.

③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일부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 못하여 다시 동일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第60條(不服) ①保護處分에 대한 抗告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家庭保護事件과 함께 抗告審에 移審된다. 保護處分에 대한 再抗告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抗告審에서 第1審 決定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 · 變更할 수 있다.

③行爲者는 保護處分決定에 대하여 抗告를 제기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는 7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의 粟却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律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7日이내에 再抗告 할 수 있다. 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決定에 대하여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再抗告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 第3項 및 第4項에 의한 抗告와 再抗告는 賠償命令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第61條(賠償命令의 效力과 強制執行) ①확정된 賠償命令 또는 侵權行宣告 있는 賠償命令이 기재된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은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있는 民事判決 正本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확정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 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없다.

第62條( 다른法律의 準用) 이 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訴訟促進등에 관한特例法과 民事訴訟法의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 第 4 章 罰 則

第63條(保護處分의 不履行罪) 第4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行爲者는 2年  
이하의 懲役이나 2千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64條(秘密嚴守등 義務의 違反罪) ①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  
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補助人(辯護士를 제외한다), 相談所등의 相談  
員 또는 그 長(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1年이하 懲役이  
나 2年이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8條第2項의 報道禁止義務를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發行人 且  
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 기타 出版  
物의 著作者와 發行人은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5條(過怠料) 정당한 사유없이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하거나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제출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附 則

이 法은 1998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法律案

第1條(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을 예방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家庭을 육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 처벌등에 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行위를 말한다.
2. “家庭構成員”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 처벌등에 관한特例法 第2條第2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3. “一時保護”라 함은 家庭暴力으로부터 被害者 또는 그 家庭構成員을 保護하기 위하여 宿食提供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保護를 말한다.
4. “被害人”라 함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第3條(家庭의 보호와 유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個人이 家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家庭과 家族制度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國家 등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家庭暴力에 관한 申告體制의 구축 및 운영

2.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研究, 教育과 相談의 實시
3. 被害者에 대한 保護施設의 設置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4. 家庭暴力의 實態 調查 및 홍보
5.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法令의 정비 및 각종 政策의 수립 및 施行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豫算상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③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에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機構와 公務員을 두어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및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되는 家庭暴力관련相談所·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에 대하여 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第5條(相談所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관련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相談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相談所의 設置基準, 相談員의 資格基準과 數 및 申告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被害者를 임시 보호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인도하는 일
3. 行爲者에 대한 告發 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나 각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보호가 필요한 被害者를 警察官署 등으로부터 인도 받는 일
5.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家庭暴力 행위 및 被害에 관한 調査·研究

第7條(保護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 및 認可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8條(保護施設의 業務) ①保護施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第6條 各號의 일
2. 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被害者の 身體的·精神的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돋는 일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護施設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한다.

第9條(被害人 意思의 尊重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被害者の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18條의 보호를 할 수 없다.

第10條(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5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監督)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운영

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2條(認可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5條第3項 또는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萬利의 目的으로 운영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設置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때

第13條(經費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14條(相談所의 統合 設置 및 運營)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 · 운영하는 相談所 또는 보호시설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相談所나 保護施設과 통합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第15條(營利目的運營의 禁止) 相談所나 保護施設은 營利를 目的으로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에서 第6條 또는 第8條의 業務를 행하는 者 또는 행하였던 者는 그 業務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家庭暴力관련相談所 ·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8條(治療保護) ① 醫療機關은 被害者 본인 · 가족 · 친지 또는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治療保護를 실시하여야 한다.

1. 被害者的 保健相談 및 지도

2. 家庭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 · 정신적 治療

② 第1項의 경우에 그에 필요한 일체의 費用은 家庭暴力을 행한 者가 부담한다. 다만, 家庭暴力을 행한 者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한다.

③第2項의 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權限의 委任) 保健福祉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20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申告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設置·運營한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取消·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 명령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의 義務를 위반한 者
4. 第18條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第21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の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の 業務에 관하여 第2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に 대하여도 같은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2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調査·検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 則

이 法은 1998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